

의안번호	제 44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4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(2007. 10. 4)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→ 제41조 (안 제1조)

「동법시행령」 제19조의2 → 제52조 (안 제1조)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제2항 → 제104조제2항, 제104조 내지 제107조 →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, 제108조 및 제111조 → 제117조 및 제120조 (안 제5조)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36제3항 → 제41조제3항(안 제6조)

4) 「지방자치법」 제36제4항 → 제41조제4항(안 제9조, 제9조의3)

제36제5항 → 제41조제5항(안 제9조)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37제2항 → 제42조제2항(안 제9조의2)

나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
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7조)

2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1조·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42조, 제104조, 제113조부터 제117조, 제120조

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6조”를 “제41조”로, “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4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형사소송법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1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1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형사소송법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”을 “법 제42조

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3항 중 “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1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3조에 따른”으로, “거창군의회회의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회의 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. (생략) 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-----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(생략) ②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~ ④ (생략) 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41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「형사소송법」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<u>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</u>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, 서류 제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</u>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“별표”와 같으며,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<u>형사소송법</u>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<u>법 제41조제4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41조제5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「<u>형사소송법</u>」-----</p>
<p>제9조의2(대리 출석 답변 등) 군수는 <u>법 제37조제2항 단서</u>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의2(대리 출석 답변 등) ----- <u>법 제42조제2항 단서</u>에 따라 관계 공무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법 제41조제4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<u>제12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<u>제13조의 규정에 의한</u>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<u>거창군의회 회의 규칙</u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징계) ----- <u>제1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제13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거창군의회 회의 규칙</u>----- 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

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제120조 (하부행정기구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2조 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